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

■ 정부안(의안번호 제2202205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연 2회 → 연 1회)	2

I . 제안경위

2024년 7월 24일 정부에서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연 2회→연 1회)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	-----	

			----- 4월 말까	
			지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1)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개요

현행법 제17조1)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는 사회적기업이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말과 10월 말까지(연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사업보고서에는 기업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유형, 조직형태, 업종 등 기업 기본정보와 사회적 목적 재투자 내용,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내용 등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 수입·지출 등 회계에 대한 사항 등이 기재되며(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제10호 서식),²⁾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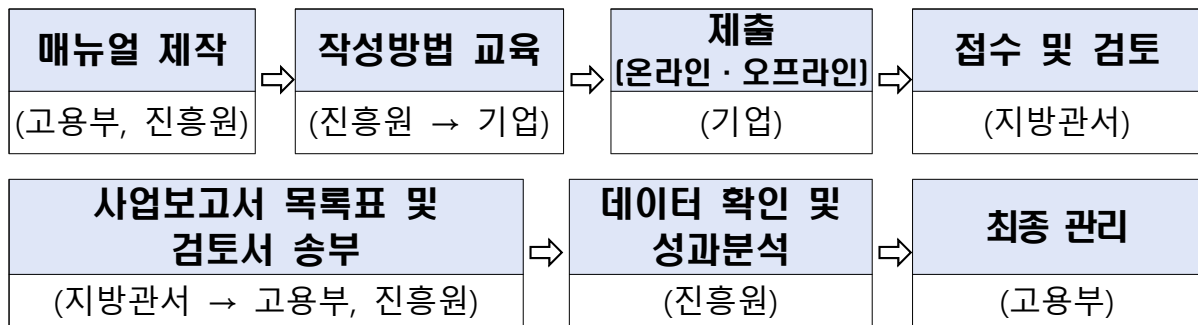
2.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³⁾ 사업보고서의 평가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⁴⁾

<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 자료: 고용노동부

-
2. 유급근로자 명부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 4)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검토의견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제출주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당시에는 연 1회로 규정되었으나,⁵⁾ 2012년 일부개정을 통해 연 2회로 강화된 바 있음.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경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했던 취지로 보임.⁶⁾

그런데 1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 비중(61.6%, '23년말 기준)이 높은 사회적기업 현장에서는 연 2회 사업보고서 제출이 행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4월, 10월)에서 연 1회(4월)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⁷⁾과 2024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 현금성 지원이 폐지된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인정되는 면이 있으나,

5) 제17조 (보고 등) ①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7.1.시행)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3482,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2011.10.17.) 검토보고서 1~2면, 9면 참조.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012년에 개정된 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2012년 개정 당시의 취지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와 현시점에서 타법령⁸⁾과의 비교,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4년 지원체계 전면 개편⁹⁾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규제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사회적기업 대상 지방자치단체·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합동 점검¹⁰⁾과 통합정보시스템 개편¹¹⁾, 자율경영공시제도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또한 사회적기업 관련 통계도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4월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관리되므로, 10월 보고서 제출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9

8) 사회적협동조합은 연 1회 사업결산보고서 등 경영공시 자료를 제출함(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7조)

9) 인건비 등 현금성 지원 폐지 및 판로 등 간접 지원 강화와 자생력 제고

10) '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합동 점검을 '15년 하반기부터 강화(기존 재정지원 위주 점검 → 재정지원+인증(사회적기업)·지정(예비사회적기업) 요건 등 점검 포함)

11) '23년 통합정보시스템 개편(기재부·한국재정정보원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정부지원 및 근로자 고용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을 통해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

참고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서식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서식] <개정 2019. 12. 20.>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부(10월) 제출 시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③고용, ④사회서비스제공, ⑤지역사회공헌, ⑥기타만 작성합니다. (알록)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변경[]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농(어)업회사법인[] 영농(어)조합법인[] 기타[]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정 부 지 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 간 지 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mm × 297mm [백상지 80g/㎡]

(뒤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 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보건[] 사회복지[] 보육[] 환경[] 간병·가사 지원[] 산림[] 고용[] 청소[] 문화·예술[] 관광·운동[] 문화재[] 기타[]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 공 인 원	
	취약계층					HO HO HO HO	
	비취약계층					HO HO HO HO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시/도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00지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연 번</th> <th>근로자 성명</th> <th>생년 월일</th> <th>성별</th> <th>취약계층 유형</th> <th>입사일</th> <th>월평균 임금</th> <th>시간당 임금</th> <th>근로 시간</th> <th>고용 형태</th> <th>직종</th> <th>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th> <th>기타정부지원 여부</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연 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 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 여부												
연 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 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 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